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72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3
2. 징벌적 배상제도 관련 논의	4
3. 제정안의 조문별 검토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박주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4. 12. 6.
3. 회 부 일: 2024. 12. 9.

II. 제안이유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더 부과하는 또다른 손해배상을 의미함. 최근 소비자와 일반시민에 대해 영리형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실제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함(안 제4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안 제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 혹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도모함(안 제8조).

마.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함(안 제9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민사법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전보적 손해배상(填補的 損害賠償, compensatory damages), 즉 전보배상으로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는 것을 말함.

제정안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전보배상 외 추가적인 책임을 지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전보배상액의 2배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 징벌적 배상청구의 병합심리 및 배상액 산정 시 참작사항 등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징벌적 배상제도 관련 논의

가. 징벌적 배상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징벌적 배상제도의 의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vindictive damages)은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한편으로 고의에 기한 가해자를 응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 내지 다른 사람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actual loss, actual damage)의 만족을 의미하는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에 더하여 특별히 부과하는 또 다른 배상을 의미함.

즉, 징벌적 배상이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적 목적과 재발 억제라는 예방적 목적이 민사책임에 혼용된 손해배상제도로, 영국에서 기원하여 17세기 이후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되었으며, 계약법에는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에만 인정되고 있음.¹⁾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악의에 의한 소비자·일반시민에 대한 영리형 불법행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한 강요행위 등이 다수 문제되고 있어, 위하와 응징을 핵심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

1) 국회 법제실, 『법제 기준과 실제』, 2024, 646면.

하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하급심 판례에서 징벌적 배상은 보통법(common law)상 인정되는 구제방법으로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배상형태로 판시되었고,²⁾ 2004년 말에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지만, 연구 부족, 공론화 미비 등으로 도입에 이르지 못함.

다만,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징벌적 배상이 최초로 도입된 후, 특정 분야들에 한정하여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현황(2025년 2월 기준)>

분야	법률(조항)	상한	대 상	도입 연도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	3배·5배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당한 발주 취소 등	20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4조)	3배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20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3배	허위정보제공 상품·용역 공급의 부당 중단 등	2017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에서는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보통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 징벌적 배상을 정의하면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라고 판시함.

분야	법률(조항)	상한	대 상	도입 연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3배	대규모유통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상품 반품 등	20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	3배	부당공동행위(담합) 등	20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3배	축산계열화사업법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20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3배	납품대금 조정신청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의 보복조치 등	2019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	5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	5배	신용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15
소비자 안전	제조물 책임법(제3조)	3배	제조물 책임	2017
	환경보건법(제19조)	3배	환경유해인자로 발생한 환경성 질환 등 손해	2018
	자동차관리법(제74조의2)	5배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2020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3배	차별적 처우	20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3배	차별적 처우(기간제법 준용)	20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3배	차별적 처우	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5배	중대재해 발생	2022
지식 재산권	특허법(제128조)	3배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3배	영업비밀 침해행위	20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3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2019
	디자인보호법(제115조)	3배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2020
	상표법(제110조)	3배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	2020

분야	법률(조항)	상한	대 상	도입 연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7조)	3배	지리적표시권 침해(상표법 준용)	2020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의2)	3배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	2017

(2) 징벌적 배상제도의 기능 및 필요성

징벌적 배상은 손해전보의 보완, 제재(punishment) 및 억지(deterrence)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징벌적 배상의 도입 필요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징벌적 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 외에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 가해자를 응징하는 제재적 기능을 수행함.

둘째,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의 유인을 제거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억지함.

셋째, 일반적 손해배상과 달리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실제 손해 외에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현황

징벌적 배상제도와 관련한 일반적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데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징벌적 배상제도 관련 일반적 논의사항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음.

(가) 법체계의 정합성 관련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와 형사책임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어 징벌이나 제재는 형벌 또는 행정규제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징벌적 배상은 손해전보 외에 징벌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법제의 정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배심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배상액 산정의 재량이 사실심 법관에게 부여될 것인데, 법관에 따라 배상액의 편차가 심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 시비 등이 제기될 수 있고,

영미법계 국가들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관련 사례별로 구속력 있는 판례법으로서 축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이중처벌 금지 관련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하나의 불법행위에 제재적 성격의 징벌적 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이란 제재가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³⁾

(다)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관련

징벌적 배상은 기능적으로 제재적 성격 또는 본보기를 보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잉처벌금지 원칙 위배 우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적법절차 원칙 관련

형사소송절차는 행위자의 불법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나, 징벌적 배상제도는 이러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우회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형사상 제재와 유사한 징벌을 부과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2)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거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은 「민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2004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및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입 논의가 계속 있었으나, 특정한 분야의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왔을 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음.

이에 제정안은 특별법 형태로 징벌적 배상을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사회적 여건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양립함.

(가) 전면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

첫째,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손해보전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고,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충분하고도 완전한 손해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실손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재·억제할 수 있음.

즉,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 규모는 작은 반면 가해자가 그러한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셋째,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의 입증요건이 엄격하여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나, 형벌을 부과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영역에서 징벌적 배상이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하면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음.

그 밖에도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의 필요성은 특정 불법행위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징벌적 배상을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경우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영역과 인정되지 아니하는 영역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은 과도한 배상금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함.

(나) 전면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

첫째, 징벌적 배상제도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많은 이익(우발이익)을 얻도록 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뿐 우발이익의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⁴⁾ 징벌적 배상제도는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근본원칙 및 제도와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비교법적 측면에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징벌적 배상제도는 영미법계의 보통법에 따라 인정되어 왔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체계상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를 찾기 어려움. 더욱이 영미법계인 영국은 공무원의 억압적 행위 등 3가지 영역⁵⁾에

4) 민법상 우발이익 방지를 위해 인정되는 법리

- 손익상계: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가져다준 경우에, 그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 손해배상자의 대위: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함.

5) 영국에서 징벌적 배상은 ① 공무원의 억압적 행위, ②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득을 얻은 경우, ③ 제정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지적재산권법 등)에만 인정됨.

서만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최근 입법 및 판례를 통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셋째, 현행 민·형사 소송체계와도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와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고, 자백간주·공시송달 등 간이한 절차에 의한 사실인정이 가능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처벌 성격을 갖는 징벌적 배상책임이 민사소송의 완화된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 밖에도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濫訴) 발생 가능성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시 위자료를 대폭 상향하거나 과징금 부과 및 집단소송 등을 통해 징벌적 배상제도의 불법행위 억제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다) 소결

현재 징벌적 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분야의 개별 법률에 도입되어 있고, 「민법」 또는 특별법을 통한 전면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법」이나 특별법을 통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경우에는 불법행위 피해자 간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

고,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임.

다만,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우리나라 민사법의 손해배상 원칙 및 민·형사상 소송체계 등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 및 사회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⁶⁾

다. 외국의 사례

징벌적 배상제도는 영국에서 판례법에 의하여 처음 형성된 제도로서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법과 제정법(statute)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1) 영국

징벌적 배상제도는 영국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보통법(common law)상의 판례⁷⁾로 인정되어 발달하였는바, 전보적 손해배상

6) 참고로, 2004년 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위반은 아닌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징벌배상법안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고 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한 분야를 식품, 제조물책임, 환경, 보건,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언론, 노동, 공정거래, 증권거래 등 9개 분야로 한정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

7) 영국에서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Wilkes v. Wood 사건(1763년)으로 해당 사건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팜플렛을 인쇄한 것으로 의심받던 출판업자가 적법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배상으로 징벌배상이 인정됨.

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영역에서 예외적으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고 있음.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영국의 징벌적 배상제도는 1964년 *Rookes v. Barnard* 판결⁸⁾을 통해서 현대적인 정립 기준을 확립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세 가지 범주를 정하여 판결하였으며, 이후 영국에서 징벌적 배상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됨(일명 *Rookes* 원칙).

첫째, 정부공무원의 억압적, 자의적 또는 위헌적(*oppressive, arbitrary or unconstitutional*) 행위를 한 경우로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억압적 권력남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후 대법원은 *Cassell & Co. Ltd. v. Broome* 판결에서 경찰, 지방공무원, 그리고 기타 공무원의 행위도 공무원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함.⁹⁾

둘째,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로부터 얻을 이익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보적 손해배상을 공제하고도 남는 이득이 있다는 계산 하에 과감하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임. 일반적으로 해당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명예훼손,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또는 악의적·불법적 행위임.¹⁰⁾

8) *Rookes v. Barnard*, [1964] A.C. 1129 (H.L.).

9) *Cassell & Co., Ltd. v. Broome*, [1972] 1 All E.R. 801, 830 (H.L.).

10) 법무부,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3면.

셋째, 제정법(statute)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배상의 부과를 규정한 경우임.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해당 금액이 가해자의 징벌에 적절한 금액인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악의적으로 행동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Rookes v. Barnard* 판결은 판사와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자제력(moderation)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배상액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2)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1851년 징벌적 배상제도를 보통법(common law)상의 확립된 제도로 수용하였음.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판례마다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보통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 인정된다고 보는 판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의해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상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판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판례, 일반적으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과 같은 계약법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판례 등이 존재함.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는 주(州)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네브래스카 등 소수의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주는 배상액의 한도를 절대액(\$ 250,000 내지 \$ 350,000)으로 정하거나 전보적 손해(compensatory damage)의 5배수 또는 가해자의 과거 1년 수입으로 함. 하지만 과반수의 주는 한도 규율이 없으며, 배상액을 피해자에게만 주지 않고 정부나 공익단체 또는 원고 변호사에게 할당하도록 규율하는 주도 있음.

이에 징벌적 배상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위하여 1996년 전미 통일법 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에서 징벌적 배상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 징벌배상법(Model Punitive Damages Act)을 마련함.

이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고의나 중과실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요구되는데, 미국에서 통상적인 징벌적 배상의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i)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ii) 사회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잘못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에 대해 악한 동기(evil motive)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을 가지고 한 행위, iii)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통상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나, 고용 기간 만료 전에 갑자기 강압적으로 피용

자를 해고한 경우, 계약위반 자체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만큼 위반자의 악성이 강한 경우, 피해자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함.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는 영역은 i) 폭행, 감금, 유괴 등 신체적 권리 침해나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권 침해, ii) 제조물책임, 차별행위, 횡령, 사기, 음주운전, 금융거래 불법행위, 전문가책임, iii) 계약책임에서는 사용자의 고의적 계약위반, 사기에 의한 물품구입계약체결 등 불법행위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임.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는 징벌적 배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법관이 배심원에게 징벌적 배상의 개념을 설명(jury instructions)¹¹⁾하고, 이러한 설명에 따라 배심원은 피고에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며, 배상금액을 산정할 권한을 가짐.

배심원은 i) 문제가 된 위법행위의 악성의 정도, ii) 사회에 대한 영향, iii)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iv) 피고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며, 배심원이 산정한 배상액이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된 경우,

11) 일반적인 배심설명 예는 다음과 같다. “징벌배상을 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이 배상액의 목적이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그리고 그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기타 이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경고로서 기능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John J. Kircher & Christine M. Wiseman, Punitive Damages: Law and Practice § 11:1 (2d. 2013) 이하 참조.

법관은 직권 또는 피고로부터 배상액 감액 신청 또는 재심리 신청 (motion for a new trial)에 따라 배상액 감액절차를 진행하고, 배상액 감액결정이 내려진 경우 원고는 이 결정에 따를지 아니면 재심리를 구할지 선택해야 함.¹²⁾

즉,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실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로 산정될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

가령, Pac. Mut. Life Ins. Co. v. Haslip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보적 손해배상 사이의 비율이 4:1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TXO Prod. Corp. v. All. Res. Corp. 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10:1을 초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 v. Campbell 사건에서는 10: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Exxon Shipping Co. v. Baker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보적 손해배상의 비율은 1: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보다 높은 비율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위가 지극히 예외적으로 악의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징벌적 배상 인정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손

12) 법무부, 앞의 보고서, 24면.

해배상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파산하는 기업의 증가 및 보험료 급증 등의 사태가 초래되자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였고, 징벌적 배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요건의 엄격화, 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의 엄격화 및 피고행위의 악성과 손해액의 균형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¹³⁾

(3) 캐나다

캐나다 퀘벡주의 민법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규를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헌법상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다른 주의 경우 대체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미국에 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좁게 인정하고 있음.

다만, 캐나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정한 유형에서만 인정하는 영국의 판례를 따르지 않으며, 계약상 책임을 위반하거나 형평법상 책임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음.

13)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 90면.

채무자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만이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드물지만, 중과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규정하거나 배상금을 국가에 귀속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4) 대륙법계 국가

징벌적 배상제도는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제도로서 일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일반적인 전보배상의 수준을 넘는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있음.

라. 우리나라의 징벌적 배상 도입 법률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3개의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과거에는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배상의 한도를 3배 이내로 하면서 고의·과실을 주관적 요건으로 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개별법에서는 배상액 상한을 5배로 규정하고, 고의·중과실 또는 명백한 고의를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음.

징벌적 배상을 도입한 대표적인 법률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2011년 3월 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였으며,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이후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를 상한으로 배상하도록 변경되었음.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¹⁴⁾ 2014년 3월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됨.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4)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5년 3월에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2020년 2월 법 개정으로 배상액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됨.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2023년 3월 법 개정으로 배상액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됨.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공급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법 제정을 통하여 도입됨.

(6)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담합 등과 같은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8) 특허법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배상액의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됨.

(9)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¹⁵⁾이 고의나 중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 내에서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2021년 1월 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음.

1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3. 제정안의 조문별 검토

가. 목적(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1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소송의 특례절차를 마련하여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징벌적 배상제도는 피해자의 충분한 손해배상과 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상 특정한 유형에 도입되어 있으나, 불법행위 전반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음.

제정안은 민사법의 특례로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당 제도의 전면 도입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간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우발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원칙과 민사·형사 소송체계와의 부조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안 제4조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가중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안 제1조의 목적조항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이라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와 제5조 등 이 법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의(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보배상”이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2. “징벌적 배상”이란 전보배상 외에 제4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3. “징벌적 배상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에 이 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의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에서는 전보배상, 징벌적 배상 및 징벌적 배상소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배상은 전보배상과 달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이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배상을 도입한 개별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만을 확장해 놓았을 뿐 ‘징벌적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제정안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징벌적 배상을 법률용어로 수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이 제1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1호의 전보배상의 정의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2호의 징벌적 배상 정의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전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임.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벌적 배상 및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③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정안 제3조는 징벌적 배상 및 소송절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¹⁶⁾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전보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제2항에 따라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는 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조제2항은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민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징벌적 배상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물 책임법」 제8조¹⁷⁾와 같이 안 제3조제2항은 징벌적 배

16)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상의 인정에 앞서 충족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해당 문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17) 「제조물 책임법」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라. 징벌적 배상책임(제4조)

제4조(징벌적 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제정안 제4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징벌적 배상액의 한도는 전보배상액의 2배로 하려는 것임.

(1) 징벌적 배상책임을 요건

안 제4조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되기 위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고 규정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발생 여부를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징벌적 배상 여부가 다루어져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평균적으로 크게 높아져 남소(濫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 필요가 높다고 인정하여 징벌적 배상 규정을 도입한 현행 개별 법률에서 ‘고의’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배상의 일반법 성격을 가지는 제정안이 중

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안전, 노동 및 특허 분야에서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10개 법률¹⁸⁾에서는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나 명백한 고의’만을 요구할 뿐,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위 10개 법률에 규정된 불법행위의 경우, 안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별법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 경우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개별법의 징벌적 배상규정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임이 없게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오히려 징벌적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별 법률의 위반행위 중 제재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제정안에 따라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로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음. 즉,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불법행위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손해배상소송 남용 방지의 필요, 법체계적 정합성 확보 및 형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정안에서 고의뿐 아니라 중과실도 징벌적 배상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18)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관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징벌적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국내 개별법은 가해자의 징벌 및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는 분야의 위법행위에 한정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주관적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상 징벌적 배상제도에서의 주관적 요건>

분 야	법 률 명	주관적 요건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고의, 중과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
소비자안전	제조물 책임법	고의
	환경보건법	고의, 중과실
	자동차관리법	고의
노 동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백 고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백 고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명백 고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

분 야	법 률 명	주관적 요건
지식재산권	특허법	고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디자인보호법	고의
	상표법	고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고의, 과실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고의, 과실

(2) 징벌적 배상액의 한도 설정

안 제4조는 징벌적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액의 2배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제2호는 징벌적 배상을 전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액의 상한은 전보배상액(손해액)의 3배가 될 것임.

이는 현재 징벌적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액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마.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가중책임(제5조)

제5조(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가중)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에게 제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정안 제5조는 징벌적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액의 2배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생명·신체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상한 없이 징벌적 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생명·신체 침해 불법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신체 침해의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상부터 장애에 이르는 중상해까지 매우 다양하고, 불법행위의 경위에 있어서도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신체접촉, 장기간의 학대와 지속적인 구타 등 다양한 상황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아 법원의 무제한적인 배상액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은 재판의 형평성 및 손해배상액의 자의적 산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안 제5조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가중배상 규정을 두어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지만, 개별법의 징벌적 배상 조항은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지 않거나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생명·신체 피해에만 배상액 상한¹⁹⁾을 두어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개별법을 위반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에서도 안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가중배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가중배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가해자 및 피해자 등에게 형평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판의 형평성, 법체계적 정합성, 손해배상액의 자의적 산정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과 같이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가중배상을 규정할 것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바.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정안 제6조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무효로 하려는 것으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징벌적 배상을 배제·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면책특약의 제한 규정은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등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개별법에서 두고 있고,²⁰⁾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원인행위를 계약이 전제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여부와 무관한 불법행위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 원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20) 「제조물 책임법」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정안에 계약을 전제로 한 면책특약 제한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당사자 간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해당 계약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²¹⁾ 안 제6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배상이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조치로 이해됨.

특히, 징벌적 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 개인과 기업 간의 소비자계약은 주로 약관으로 체결되고, 소비자가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면책약관에 의하여 징벌적 배상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21) 가령 구입한 물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구매자와 제3자가 위해를 입는 경우 등.

사. 인지액의 특례(제7조)

제7조(인지액의 특례)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심급별 인지액의 상한은 각 2천만원으로 한다.

제정안 제7조는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²²⁾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심급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인지액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인지액 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남소로 인하여 법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지대 부담이 없어 청구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2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함.

따라서 인지액 상한을 둘 것인지는 남소 방지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봄.

또한, 인지액의 상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도, 징벌적 배상 청구금액이 통상의 일반손해배상소송에 비하여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인지액 상한 규정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소액의 착수비용만으로 징벌적 배상 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인지액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²³⁾

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아. 변론의 병합(제8조)

제8조(병합심리 등) ①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併合審理)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8조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관계 법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리할 법원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병합심리를 통해 동일한 원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징벌적 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통일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동일 원인에 대한 다수의 소송을 병합하여 불법행위의 실질적인 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심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상급법원을 달리하는 제1심 민사소송은 병합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제1심 단계에서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가 멀리 위치한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한 징벌적 배상소송이어도 개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내역,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참작 요소 및 구체적 손해액은 다를 수 있어 의무적인 병합심리가 반드시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제9조)

제9조(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법행위의 기간 및 피해 발생 빈도
5. 불법행위 적발 시 가해자의 태도나 행위
6. 가해자의 재산 상태 및 규모
7.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제재처분의 정도
8.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받은 형사처벌, 민사확정재판 또는 그 밖의 제재처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제정안 제9조는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등을 참작할 사유로 나열하고 있음.

안 제9조 각 호는 징벌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 외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봄.

한편, 안 제9조제2호에서 원고뿐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도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제정안은 원고적격을 제한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제3자가 향후에 징벌적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제3자의 피해까지 배상액 산정시 참작하도록 하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 배상책임이 중복되는 것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안 제9조제5호는 불법행위 적발 시 가해자의 태도나 행위를 배상액 참작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적발’ 시에 가해자의 태도 등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불법행위 이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손해배상 전보 노력 등을 참작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61